제2교시 / 제3영역 / 지역사회복지론 /
Chapter 10 / 제2절 / 1. 지역사회복지계획 / 426페이지 다음 삽입

2. 지역사회보장계획

(1)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,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·군·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시·도지사는 제출받은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⑤ 시·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(2)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
1)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포함 사항.
①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, 목표 및 추진전략
②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(이하 "지역사회보장지표"라 한다)의 설정 및 목표
③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,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
④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
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

⑥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
⑦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
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2) 특별시・광역시・도・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포함 사항
① 시・군・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
②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
③ 시・군・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
④ 시・군・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
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
⑥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

(3)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
①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・단체・시설에 인력, 기술,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(4)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・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, 시・도지사는 시・군・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.
② 시・도지사는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・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(5) 지역사회보장협의체
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・법인・단체・시설과 연계・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・군・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,자문 업무
 - 시・군・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・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시・군・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- 시・군・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- 시・군・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 - 읍・면・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・법인・단체・시설의 대표자

-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
-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
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